

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 번호 | 9-798 |
|----------|-------|

제출년월일 : 2025. 8. 12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1. 제안이유

-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사용기준 마련 및 사용료 정비

2. 주요내용

- 가. 사용료 감면 범위 확대(안 제12조)
- 나. 전용사용료 반환 규정 조정(안 제13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개정조례안 : 【붙임 1】
- 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【붙임 2】
- 다. 관계법령발췌서 : 【붙임 3】
- 라.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- 마. 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 - ※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: 【붙임 4】
- 바.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 1건(반영) 【붙임 5】
 - 입법예고 : 2025. 6. 25. ~ 2025. 7. 15.(20일간)
- 사. 기타 참고사항
 - 1) 현행조례 : 【붙임 6】
 - 2) 방침결정문 : 【붙임 7】

【붙임 1】

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호 중 “지방단체”를 “지방자치단체”로 한다.

제8조제2호 중 “전염성 질병”을 “감염병 질환”으로 한다.

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연습사용료를”을 “연습사용료 등을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.

1.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:
우: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

제1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그 밖에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용료 감면 및 반환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기준 30일 이후 접수되는 건부터 적용한다.

| 소관부서 | | 체육진흥과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입 안 자 | 체육진흥과장 | 이 자 영 |
| | 체육시설팀장 | 박 은 영 |
| | 담 당 자 (연락처) | 장 한 신 (481-2148) |

【붙임 2】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|
| <p>제4조(개방제한) 다음 각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민생활관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경우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.</p> <p>1. 국가, <u>지방단체</u>의 특별한 행사</p> <p>2.·3.(생략)</p> | <p>제4조(개방제한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 <u>지방자치단체</u> ----- 2.·3.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8조(입장의 거절 및 퇴장)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생활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전염성 질병</u>이 있는 사람</p> <p>3.~6.(생략)</p> | <p>제8조(입장의 거절 및 퇴장) 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 2. <u>감염병 질환</u>----- 3.~6.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12조(사용료의 감면)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료(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를 포함한다)와 <u>연습사용료</u>를 감면할 수 있다. 다만, 감면사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감면액이 많은 규정을 적용한다.</p> | <p>제12조(사용료의 감면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--<u>연습사용료</u> 등을 -----</p> |

1.~4.(생략)

제13조(사용료의 반환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.

1.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 신청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반환한다.

가. 사용일 4일 전부터 전일까지 :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

나. 사용일 5일 전까지 : 전액 반환

2. (생략)

②~④(생략)

<신설>

1.~4.(현행과 같음)

제13조(사용료의 반환) ① -----

-----.

1.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: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

<삭제>

<삭제>

2. (현행과 같음)

②~④(현행과 같음)

⑤ 그 밖에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을 준용한다.